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201-2017-003743



[집합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2층 제201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17년2월6일	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광장로8번길 38-8	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12층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지1층 19.55㎡ 1층 77.8㎡ 2층 163.585㎡ 3층 163.585㎡ 4층 163.585㎡ 5층 163.585㎡ 6층 163.585㎡ 7층 163.585㎡ 8층 233.7㎡ 9층 172.275㎡ 10층 172.275㎡ 11층 172.275㎡ 12층 119.4㎡	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.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	대	369.1㎡	2017년2월6일 등기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17년2월6일	제2층 제201호	철근콘크리트구조 67.640㎡	

[집합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2층 제201호

(대지권의 표시)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 소유권대지권	369.1분의 16.160	2017년1월26일 대지권 2017년2월6일 등기
2			별도등기 있음 1토지(을구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) 2017년2월6일 등기
3			2번 별도등기 말소 2017년3월17일 등기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소유권보존	2017년2월6일 제37952호		소유자 신미경 651104-*****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110번길 20, 105동 1504호(십정동, 부평금호어울림아파트)
2	소유권이전	2017년7월7일 제245937호	2017년1월19일 매매	소유자 정명준 900915-*****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53(십정동)
3	소유권이전	2020년3월31일 제153829호	2020년2월16일 매매	소유자 남승엽 610501-*****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73번길 71,408동 1302호 (금곡동, 엘지빌리지아파트) 거래가액 금200,000,000원
3-1	민간임대주택등기	2022년11월18일 제388533호	2020년4월29일 민간임대주택 등록	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
4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11월4일 제5793181호	2025년11월4일 인천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25타경513	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184371-000312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(인천관리센터)

[집합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2층 제201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615)	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근저당권설정	2017년3월17일 제91694호	2017년3월17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2,080,000,000원 채무자 신미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110번길 20-105동 1504호(십정동,부평금호어울림아파트) 근저당권자 인천산곡새마을금고 124253-0000824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361번길 31(산곡동) 공동담보목록 제2017-392호
2	근저당권설정	2017년7월7일 제245938호	2017년7월7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163,200,000원 채무자 정명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53(십정동)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우리은행 110111-0023393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(회현동1가) (작전역지점)
3	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	2017년7월7일 제245939호	2017년7월7일 일부포기	
4	2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	2020년4월1일 제156947호	2020년4월1일 해지	
5	주택임차권	2024년1월22일 제27459호	2024년1월17일 인천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(2023카임16446)	임차보증금 금210,000,000원 범 위 제2층 제201호 67.640㎡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2021년12월30일 주민등록일자 2021년11월12일 점유개시일자 2021년11월13일 확정일자 2022년1월17일 임차권자 정하은 941223-*****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광장로8번길 38-8, 201호(십정동,디에이치씨밀레)
5-1				5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24년1월22일 부기

[집합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2층 제201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5-2	5번임차권경정	2024년5월28일 제194614호	2024년5월24일 인천지방법원의 경정결정(2024 카경10260)	임차보증금 (1)금219,000,000원 (2)금210,000,000원 임대차계약일자 (1)2021년10월9일 (2)2021년12월30일 확정일자 (1)2021년10월18일 (2)2022년1월17일

【 공동담보목록 】

2017-392					
일련번호	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	관할등기소명	순위번호	기타사항	
				생성원인	변경/소멸
1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2층 제201호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7년7월7일 제245939호 일부포기
2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3층 제301호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7년5월24일 제178293호 일부포기
3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4층 제401호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7년9월7일 제332213호 일부포기
4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5층 제501호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7년8월29일 제318098호 일부포기
5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6층 제601호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7년7월11일 제250049호 일부포기
6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7층 제701호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7년5월31일 제192052호 일부포기

[집합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2층 제201호

일련번호	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	관할등기소명	순위번호	기 타 사 항	
				생성원인	변경/소멸
				인하여	
7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7층 제702호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7년6월2일 제196576호 일부포기
8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8층 제801호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8년3월20일 제101350호 해지
9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8층 제803호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8년3월20일 제101350호 해지
10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9층 제901호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7년12월20일 제477232호 일부포기
11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9층 제902호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7년12월12일 제465066호 일부포기
12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9층 제903호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8년2월20일 제59577호 일부포기
13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10층 제1001호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8년2월2일 제42135호 일부포기
14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	2017년8월9일 제291409호

[집합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2층 제201호

일련번호	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	관할등기소명	순위번호	기 타 사 항	
				생성원인	변경/소멸
	제10층 제1002호			설정계약으로 인하여	일부포기
15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10층 제1003호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7년12월22일 제481618호 일부포기
16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11층 제1101호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7년12월29일 제491826호 일부포기
17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11층 제1102호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7년8월9일 제291412호 일부포기
18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11층 제1103호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7년12월15일 제471961호 일부포기
19	[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밀레 제12층 제1201호	인천지방법원 등기국	1	2017년3월17일 제91694호 설정계약으로 인하여	2017년5월24일 제178293호 일부포기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201-2017-003743

[집합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-23 디에이치씨빌레 제2층 제201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남승엽 (소유자)	610501-*****	단독소유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73번길 71,408동 1302호 (금곡동, 엘지빌리지아파트)	3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3-1	약정/금지사항/환매특약	2022년11월18일 제388533호	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	남승엽
4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11월4일 제5793181호	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	남승엽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5	임차권설정	2024년1월22일 제27459호	임차보증금 금210,000,000원 임차권자 정하은	남승엽
5-2	임차권경정	2024년5월28일 제194614호	임차보증금 (1)금219,000,000원 (2)금210,000,000원	남승엽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